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내

윤웅로 / 환경부 폐기물정책과 행정사무관

1. 머리말

환경부는 지난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하위법령 등을 개정하여 20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보다 사업자의 책무가 강화되고, 위반행위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정부가 1회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이유는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1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1회용품이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1회용품은 대체 품 보다 경제성이 뛰어난데다 품질면에서도 앞서는 경우가 많고, 최근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패턴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회용품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수집·운반 등이 어렵고, 합성수지 등 난분해성 재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소각 시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처리가 어렵고, 회수되지 않은 1회용품은 주변환경을 크게 더럽힐 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매우 불결한 물질이다.

2. 그간 추진실적 및 성과

2-1. 추진경위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92. 12. 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에관한법률 제정 시(실제시행은 '94. 3월)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목욕장·백화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1회용품 사용을 자체 토록 권고하였다.

초기 규제 대상사업장은 주로 음식점과 숙박업소, 목욕탕, 백화점 등이고, 주요 규제내용은 1회용컵, 종이,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과 1회용 면도기, 칫솔·치약, 1회용 샴푸·린스 등이다.

이후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는 규제대상물질과 대상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음식점은 당초 33m² 이상에서 전체 사업장 ('98. 12. 31)으로, 숙박업소는 30실 이상에서 7실 이상으로 ('96. 12. 28), 판매업소는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및 쇼핑센터에서 60평 이상의 유통매장 ('96. 12. 31)으로



특집

개정된 후 다시 33m²(98. 12. 31)으로 이상 규제 대상 사업체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최초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락제조업체('95. 8)와 통계 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가정용품 도·소매업('96. 12)등에 대하여도 추가 적용하였다.

또한, 규제대상물질도 이쑤시개(전분이쑤시개 제외)와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95. 2) 및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1회용도시락('95. 8)이 추가되었다. 한편, 규제내용도 처음 과는 다소 조정되었는바, 당초 백화점 등 판매업 소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봉투의 사용을 금지(자제) 하였는데 이를 무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변경하였고, 대신 유상 판매되는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은 재질에 관계없이 확대('99. 2)하였다.

2-2. 추진성과

정부의 꾸준한 1회용품 사용억제정책으로 일반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나무젓가락, 스티로폼 접시 등이 거의 사라지고, 목욕탕 및 숙박업소에서 면도기·칫솔·샴푸·린스 등의 무절제한 사용이 없어졌으며,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의 1회용 봉투·쇼핑백 사용량이 50% 이상 감소되었다.

동 정책의 파급효과로 합성수지재질의 용기가 친환경적인 재질로 대체되고, 친환경적 대체상품의 개발 및 관련산업이 발전하여 장바구니 제조업체, 종이용기 및 전분이쑤시개 등 친환경 대체품 업계의 활성화로 산업의 전문화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국민의 환경의식이 제고되어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장바구니·쇼핑카트 사용이 활성화되고, 샴푸, 세제 등

리필제품을 선호하는 등 건전한 쇼핑문화 확산에 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3. 시행상의 문제점

하지만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1회용 비닐식탁보나 응원용품 등 새로운 물질들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약국이나 서점 등 예외 규정이 많아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의무불이행 시 제재수단이 미약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1회용품 관련규정을 대폭 강화하였다.

3. 주요 개정내용(붙임 요약표 참조)

3-1. 사업자의 책무강화

금번 개정안의 특징은 규제대상물질인 1회용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책무를 강화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종전에도 하위규범에 규제대상물질에 대한 범위 등이 명시되긴 하였지만 법률 및 시행령에 1회용품에 대하여 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사업자에 대한 책무도 종전에는 1회용품에 대한 사용자제 또는 무상제공역제 등으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번 개정안에서는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금지 등 보다 강한 표현을 사용하여 사업자의 준수의무를 강조하였다.

3-2. 행정처분 제도 변경

또 하나의 특징은 법규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

과할 수 있게 하였다. 종전에는 담당공무원이 법 규위반 행위자를 적발하였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권고나 이행명령 등 시정기회를 주었다. 물론 권리구제처원에서 보면 바람직 하나 이를 남용하는 사업자들 때문에 동 법률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하였다.

3-3. 세부규제내용

3-3-1. 규제 대상물질 추가

그동안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1회용 비닐식탁보나,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에서 사용되는 1회용 막대풍선 등 응원용품을 추가로 규제하게 되었다.

1회용 비닐식탁보는 사용처가 제한되고 위생상 필요한 물질이나 그동안 횟집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등 과도하게 자원을 낭비하고, 1회용 막대풍선 역시 경기활성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수거 및 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추가로 규제하게 되었다.

3-3-2. 적용 사업장 추가

1회용품 규제에서 그동안 제외되었던 약국과 서점도 2003. 7. 1부터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33제곱미터 이하의 도·소매업소도 시·군·구의 조례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규제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배달 등 외부반 출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에 대하여는 합성수지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 것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의 경우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는 현행과 같이 규제하되,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떡, 만두, 순대, 반찬류를 담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에 대하여도 규제를 추가하였다.

3-3-3. 면제사업장 관리강화

페스트푸드나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처럼 매장내에서 사용한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재활용할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사업장에서 면제하였으나 2003. 7. 1부터는 매장면적이 150평방미터 미만인 사업장이거나 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으로 제한하였다.

4.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4-1. 규제대상물질

규제대상물질은 1회용품으로서 다음의 것으로 한다.

-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2) 1회용 나무젓가락
-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한다)
- 4)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되거나 첨합된 것에 한한다)
- 6) 1회용 면도기·칫솔
-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 8) 1회용 봉투 · 쇼핑백
-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0) 1회용 비닐식탁보

4-3. 규제대상사업장

-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 ·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및 객실이 7실 이상인 숙박업
- 5)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터 · 도매센터 ·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 6)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이하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도 · 소매업(제5호의 업종을 제외한다)
- 7) 표준산업분류에의한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증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8)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 체육관 · 종합체육시설

4-4. 사업자의 준수사항

-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가) 사용억제 : 1회용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 포크 · 나이프 및 비닐식탁보

- 나) 제작배포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2) 목욕장업 및 숙박업(객실 7실 이상)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칫솔 · 치약, 샴푸 · 린스
-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터 · 도매센터 ·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 쇼핑백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
 -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 쇼핑백
 -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5)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가)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터 · 도매센터 ·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 나)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터 · 도매센터 ·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도시락용에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증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 7) 운동장 · 체육관 · 종합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4-4. 예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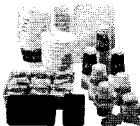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 가) 혼례 · 회갑연 · 상례에 참석한 조 ·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만, 도시락에 사용되는 1회용 용기의

[표 1] 1회용품관련법령개정사항(요약표)

| 구 분 | 종 전 | 개 정 안 | | 시 행 일 |
|----------------------------|--------------------------------|--|-------------|--------------------------|
| 규제대상물질 (1회용품) 정의 | 신 설 | 용어정의 명시 (법제2조제10호 및 시행령제5조, 별표1) | | |
| 사업자의 의무사항 | - 사용자제 | - 사용억제 | 시행규칙 별표2 | 2003. 1. 1 |
| | - 무상제공억제 | - 무상제공금지 | | |
| | - 실천사항 | - 준수사항 | | |
| 의무불이행 시 제재수단 | - 이행명령 후 과태료 부과 | - 즉시 과태료부과 (법제41조제1항제3호) | | |
| 세 부 규 제 내 용 | 식품접객업소 · 집단급식소 | - 1회용 비닐식탁보 - 외부 반출 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규제 | | 2003. 7. 1 (별표2, 부칙1) |
| | 도 · 소매업 | - 약국 · 서점 | | |
| | | - 33제곱미터 이하의 도 · 소매 업소도 시 · 군 조례로 규제 가능 | | |
| |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 · 제조가공업 | - 단, 대규모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회용 합성 수지도시락 용기에 한함 | | |
| | 운동장 · 체육관 · 종합체육시설 | -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 | |
| 1회용품 사용규제 면제사업장 | - 90%이상회수 재활용 시 사용 규제 면제 | - 면제사업장에 유예기간(2003. 6. 30까지) 및 조건부여 o 매장규모 : 150제곱미터 미만 o 150제곱미터 이상사업장은 환경부와 자발적협약 이행 시 | | |



특집

경우 합성수지 재질 외의 재질로 되거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라)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마)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2) 목욕장 및 숙박업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의 경우 객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

3)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도·소매센터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나)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경우

5)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으로 매장면적이 150m²미만이거나,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여기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이상 회수·재활용하는 경우와 함께 사업장내에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관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ko

사단법인 한국포장협회 회원가입 안내

들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은 물질이 나아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산업이 긍진하려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포장업계의 발전이 기업을 성장시킵니다.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본 협회에 가입하여 전국도모는 물론 애로사항을 협의하여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포장업계에서 성장하기 원하시면 (사)한국포장협회로 오십시오.

【사】한국포장협회

TEL 02) 635-9041~5